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62 발의연월일: 2022. 9. 30.

발 의 자:전주혜·정점식·박형수

장동혁 · 김형동 · 김미애

유상범 · 신원식 · 윤창현

윤주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2021년 7월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퇴 이후 현재까지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지 않아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당연히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나, 2017년 2월말 관련자를 기소한 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 특별검사팀의 사건 상당 수가 2020년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음에 따라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후임 특별검사의 임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검 사의 퇴직 후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 청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퇴직 등) ① ~ ④ (생	제14조(퇴직 등)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
	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
	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중에 특
	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
	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인계
	한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
	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조
	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한다.